

##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약관

###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다날(이하 '회사'라 합니다)과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 사이의 통신과금 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신과금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과금 서비스'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합니다.

①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는 업무

②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가 제 1 호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업무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2.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접근매체'라 함은 통신과금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유무선 전화 및 통신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유무선 전화 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말합니다.

4.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통신과금 서비스 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통신과금 서비스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5. '가맹점'이라 함은 통신과금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6. "월자동결제서비스"라 함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첫 구매 이후 재화 및 용역의 이용기간이 자 동으로 연장되어 그 대가가 이용자에게 매월 자동 청구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7. "결제 간소화 서비스"라 함은 이용자의 최초 1 회 결제시 이용자의 결제정보와 연동된 고유번호를 생성하고, 생성된 고유번호를 활용하여 이용자가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계속적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제 3 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회사는 이용자가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3.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 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지급결제정보 입력화면, 회사의 홈페이지, 전국 일간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 제 4 조 (접근매체의 관리 등)

1.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 3 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제 4 조의 2 (특정 접근매체를 이용한 거래에 대한 특칙)

1.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시 이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필요결제정보와 연동된 이용자고유번호 또는 이용자고유번호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자고유번호 또는 이용자고유번호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의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제공한 아래 각 호의 정보 등을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저장합니다.
  - ①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 확인 정보
  - ② 이용자가 가입한 통신사
  - ③ 이용자의 유무선 전화 번호
  - ④ 이용자가 설정한 비밀번호

## ⑤ 기타 통신과금서비스에 필요한 정보

3. 이용자가 필요결제정보와 연동된 이용자고유번호 또는 이용자고유번호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여 통신과금서비스를 재이용할 경우, 회사는 전항의 저장된 이용자가 설정한 비밀번호 또는 개인정보 일부를 이용자에게 확인을 받고 거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가 이용자고유번호 또는 이용자고유번호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 받아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 방법에 의하여 결제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대한 1 회의 동의로 향후 결제 이용시 이 약관의 내용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5. 이용자는 제 15 조의 방법으로 저장된 개인정보의 삭제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을 받은 즉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단, 제 12 조 제 2 항의 사항은 거래내용 확인을 위해 삭제할 수 없습니다.

### 제 4 조의 3 (월자동결제서비스)

1. 회사는 이용자가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전자적 대금 결제창에서 이용금액과 매 월 자동 결제된다는 내용에 체크하는 방법 등으로 명시적 동의를 받습니다.

2.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이용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전항의 동의를 받을 때 또는 이용금액이 증액되기 전에 이용자가 전자적 대금 결제창에서 이용금액 증액에 관한 내용에 체크 하는 방법 등으로 명시적 동의를 받습니다.

### 제 4 조의 4 (결제 간소화 서비스의 제공)

1. 회사는 이용자의 동의 또는 신청에 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시 결제 간소화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에게 결제정보와 연동된 이용자의 고유번호 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가 최초 1 회 결제정보를 등록하여 결제가 된 이후에는 결제정보 입력 없이 회사는 부여한 고유번호 등을 이용하여 인증만으로 거래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제 5 조 (모니터링 및 해킹방지 시스템 구축)

1. 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2.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①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②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③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 제 6 조 (바이러스 감염 방지)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운영하여야 합니다.

1.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2.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3.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 제 7 조 (이용자의 정보보호)

1.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대한 보호조치를 전자우편, 공지사항 등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사용자의 장비가 제 3의 사용자에게 이용 당하여 회사의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② 사용자의 장비의 H/W 혹은 S/W 의 문제로 회사의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③ 사용자가 고의 혹은 실수로 회사의 악의적인 접속을 시도하거나 접속을 한 경우

2. 이용자가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① 해당 장비의 네트워크로부터 연결케이블 제거, 서비스 포트 차단, 네트워크 주소 차단 등의 즉각적인 분리

② 해당 장비에 대한 보안점검

③ 관련 원인점검 및 패치, OS 재설치, 필터링 등의 사후 보안 조치 실시

3. 회사는 이용자가 전항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5일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이용자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자는 제 15 조 제 1 항의 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제기를 접수 후 2 주 이내로 사실을 확인하고,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 제 7 조의 2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 신고)

1. 회사는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이하 "누출 등"이라 합니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 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통지를 갈음 할 수 있습니다.

- ① 누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 ② 누출 등이 발생한 시점
- ③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④ 회사의 대응 조치
- ⑤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2. 회사는 개인정보의 누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 제 8 조 (불법 거래 차단 시스템 구축)

1. 회사는 제 3 자의 불법적인 결제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이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 ① 비정상 거래 유형 분석 시스템
- ② 복제폰 이용 거래 탐지 시스템
- ③ 기타 불법결제 의심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2. 회사는 본조 제 1 항 각 호의 시스템을 통해 불법적인 결제 요청으로 판단될 경우, 결제 요청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본조 제 2 항에 의해 결제 요청이 차단된 경우, 이용자는 제 15 조 제 1 항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 9 조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협의회)

1. 회사는 불법 과금, 복제폰, 휴대폰 광, 및 불법 마케팅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협의회(이하 "전보험"이라 한다)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이용자 보호 원칙을 선언한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2. 회사는 전보험의 민원경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항상 연락 가능한 담당자 1 인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에 협조합니다.

담당자: 주식회사 다날 결제사업본부 고객지원팀장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031)697-1004, help@danal.co.kr

3. 회사는 전보험 운영위에서 심사하고, 전보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승인하여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가맹점에게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권고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 제 10 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1.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사)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통합 표준 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전자적 대금지급 시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한 결제 환경 조성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2.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3.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거나 사용,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4.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본조 제 2 항에 해당하거나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 제 2 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②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③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5.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한 이용자의 확인절차를 마련 합니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종류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③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

6. 회사는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① 이용자가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 시 이용약관이나 안내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② 이용자가 제 4 조 제 2 항에 위반하거나 제 3 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 발생한 손해

7.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이용자에게 거래 금액 외에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건당 부과할 수 있습니다.

9. 회사는 통신사로부터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위 제공받은 정보를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제공/위탁, 주민등록번호 수집 방침 등에 고지하고 동의 받은 바에 따라 사용합니다.

10.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신과금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1. 회사는 전항의 사유로 통신과금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2.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1 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명한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의 거부, 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성실히 준수합니다.

① 청소년보호법 제 16 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제공하는 자

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 조를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 이용자에 대한 기망 또는 부당한 유인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등을 판매, 제공하는 자

13. 회사는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를 통신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 분의 4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며, 그 다음 납입기일까지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의 100 분의 5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14. 회사는 이용자가 통신사를 통하여 결제비밀번호를 설정할 경우 해당 결제비밀번호가 입력되어야만 결제가 진행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제 11 조 (고지사항)

1. 회사는 전화, 팩스,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알립니다.

2. 회사는 재화 등의 판매·제공의 대가가 발생한 때 및 대가를 청구할 때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①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②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의 거래 상대방(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합니다)의 상호와 연락처

③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 금액과 그 명세

④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

#### 제 12 조 (거래내용의 확인)



1.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 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거래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①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종류
- ② 거래 금액
- ③ 거래 상대방
- ④ 거래 일시
- ⑤ 대금을 청구·징수하는 전기통신역무의 가입자번호
- ⑥ 회사가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
- ⑦ 해당 거래와 관련한 전기통신역무의 접속에 관한 사항
- ⑧ 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⑨ 거래의 승인에 관한 사항
- ⑩ 결제인증에 관한 사항
- ⑪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전항에 따른 거래기록은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 5 조 제 1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4. 이용자가 제 1 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퍼스트타워 9 층

이메일 주소: help@danal.co.kr

전화번호: 1566-3355

제 13 조 (정정 요구)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사는 이용자의 정정요구가 이유 있을 경우 판매자에 대한 이용 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고,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 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 제 14 조 (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홈페이지([www.danalpay.com](http://www.danalpay.com))에 게시된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 제 15 조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

1. 이용자는 다음의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주식회사 다날 결제사업본부 고객지원팀장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031)697-1004, [help@danal.co.kr](mailto:help@danal.co.kr)

2. 이용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회사에게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 2 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 주일 이내에 그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와 거래 상대방 사이에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용자나 거래 상대방이 분쟁해결을 위하여 분쟁발생 사실을 소명하여 요청하는 경우 분쟁해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협조합니다.

① 분쟁의 원인이 된 대금지급과 관련된 정보(이용자 인증 관련 정보를 포함합니다)의 열람, 복사 허용

② 분쟁의 원인이 된 대금지급에 대한 회사의 보안유지 조치관련 정보의 열람, 복사 허용. 단, 공개할 경우 보안유지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제 16 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신과금 서비스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통신과금업무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 제 17 조 (재화 등의 공급계약상 대금채권의 채권자)

1. 어느 재화 등의 대가를 회사로부터 선지급 받은 가맹점과의 위 선지급 대상인 재화 등에 관한 공급계약(이용자가 거래한 가맹점이 해당 거래의 대상인 재화 등의 대가를 회사로부터 선지급 받는지 여부는 회사의 홈페이지(www.danapay.com) 결제 내역조회 부분에 이용자의 거래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과 관련하여 회사는 이용자와 해당 가맹점이 체결한 해당 재화 등의 공급계약상 대금채권의 채권자가 회사임을 해당 가맹점을 대리하여 알려드리며, 이용자는 이에 동의 합니다.

2. 회사는 회사가 제 1 항의 재화 등의 공급계약상 대금채권의 채권자가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제 1 항의 재화 등의 대금은 통신사의 휴대폰 이용요금과 함께 청구될 예정이며, 이용자가 휴대폰 이용요금과 함께 위 재화 등의 대금을 통신사에게 납부하는 경우 회사에 대한 위 대금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제 18 조 (신용보험의 가입)

1. 회사는 이용자에 대한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제 1 항의 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자가 제 17 조 제 1 항의 재화 등의 공급계약 상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신용보험계약상의 대금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에게 청구하여 보상받게 되며, 이 경우 회사의 권리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이전됩니다.

#### 제 19 조 (약관외 준칙 및 관할)

1.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부칙

1. 본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약관은 2016년 04월 19일부터 시행한다.